# "GPU, CPU, 메인보드, 메모리(RAM)" 구매요청 및 자산등록 대상 안내

(2026.04.24. 연구관리팀)

- 「2025.07.01. 개정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서 "주장비의 정상 가동 및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"도 연구장비로 정의함

**2.2.1 » 연구장비의 구성**

-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, 보조장치 그리고 부대장비로 구성되며, 연구장비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주장비를 결합하거나, 주장비와 보조장치, 또는 주장비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함
  - 주장비란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
  - 보조장치란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닌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·부속물
  - 부대장비란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, 주장비의 기본 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

- 이에 따라 우리대학도 <u>GPU, CPU, 메인보드, 메모리(RAM)</u>를 핵심 관리 부품(고가, 성능)으로 지정하여 <u>자산으로 관리함</u> (기존 소모품에서 자산으로 변경)

- <u>연구책임자 GPU, CPU, 메인보드, 메모리(RAM) 구매시 주의사항</u>

- 연구장비와 동일하게 구매요청 및 자산등록 절차를 통해 구매해야 함
- 용도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(기자재) 또는 연구활동비(비품) 항목으로 구매
- <u>구매가격 상관없이</u> 모든 GPU, CPU, 메인보드, 메모리(RAM)이 자산등록 대상임

(자산스티커는 해당 부품을 장착한 주장비(컴퓨터 등)에 부착)